

---

# 재외동포청 업무현황 보고

- 2023년 외통위 국정감사 -

---

2023. 10. 10.(화)



**재외동포청**

Overseas Koreans Agency



# 목 차

I. 일반현황 .....	1
II. 재외동포청의 미션 및 비전 .....	5
III. 재외동포정책의 변화 .....	6
IV.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 .....	7
V.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.....	8



# I. 일반현황

## 1 출범경과

-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(23.2.27.)
- 재외동포청 설립기획단 발족(23.4.21.)
- 재외동포청 출범(23.6.5.)
  - 동일자로 재외동포재단 해산,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(재외동포기본법 근거)

## 2 기구현황

- 직제 : 청장, 차장, 대변인, 3국(기획조정관실·재외동포정책국·교류협력국),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, 12과/담당관

### < 직제상 국별 업무 >

#### □ 대변인실

- ①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·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·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,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
- ④ 온라인대변인 지정·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·점검 및 평가

#### □ 기획조정실

- ① 청 내 정책의 기획 및 조정
- ② 예산의 편성·배정 및 집행·조정
- ③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
- ④ 청 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·총괄
- ⑤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
- ⑥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·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
- ⑦ 청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·조정

- ⑧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관리
- ⑨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·회신 관련 업무
- ⑩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
- ⑪ 재외동포청에 대한 민원사무 및 국민·자체 제안제도 총괄
- ⑫ 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
- ⑬ 재산등록 심사, 선물신고,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  
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
- ⑭ 민원, 제보, 비위사항의 조사·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
- ⑮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
- ⑯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#### □ 운영지원과

-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·복무·징계·교육훈련·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
- ② 보안 및 관인의 관리
- ③ 소속 공무원의 급여·연금 및 복리후생
- ④ 물품·용역·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
-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
- ⑥ 자금의 운용·회계 및 결산
- ⑦ 문서의 분류·접수·발송·관리·통제 및 기록물 관리
- ⑧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
- ⑨ 안전관리·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·운영
- ⑩ 청 내 정보화 계획 수립·추진 및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

#### □ 재외동포정책국

- ① 재외동포정책의 수립·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
- ②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·전문가와의 협조
- ③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
- ④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
- ⑤ 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국내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- ⑦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⑧ 재외동포 지원·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⑨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

- ⑩ 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·확인 및 인증, 재외국민등록,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
- ⑪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
- ⑫ 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**□ 교류협력국**

- ①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- ② 재외동포·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- ③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
- ④ 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
- ⑤ 재외동포 문화예술인·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⑥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⑦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
- ⑧ 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⑨ 재외동포 기업·경제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- ⑩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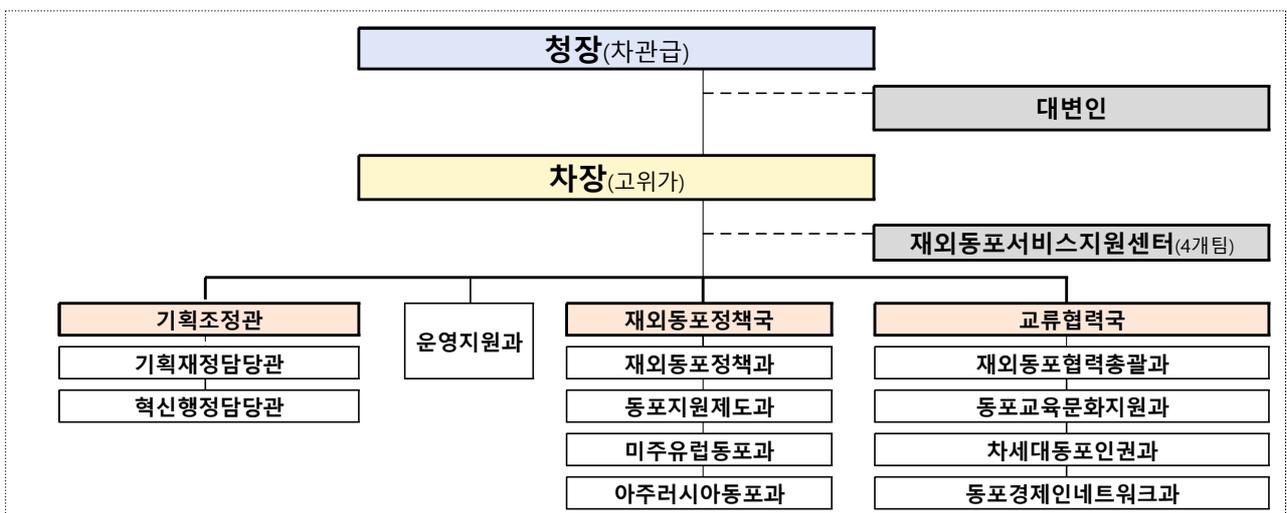
**3 인력현황**

○ 정·현원 : 정원 151명, 현원 123명(12.20. 기준)

(단위 : 명)

구분	정무직	외무직	일반직	계
정원	1	48	102	151
현원	1	28	100	129

○ 조직도



#### 4 예산현황

○ 2023년도 예산 개요

- 세입 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 예산액	2023 예산액	증감액	%
세 입	91,766	3,238	△88,528	△96.5

- 세출 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 예산액	2023 예산액	증감액	%
<b>합 계</b>	<b>68,819</b>	<b>67,625</b>	<b>△1,194</b>	<b>1.7</b>
○ 인 건 비	-	-	-	-
○ 기본경비	-	-	-	-
○ 사 업 비	68,819	67,625	△1,194	1.7

\* '23년 예산현액: 908억원(본예산 676억원+예비비 7개월분 220억원+외교부 이체 12억원)

## II. 재외동포청의 미션 및 비전

### 1 재외동포청의 미션

- (기본 미션)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.
- (부수 미션)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.

### 2 재외동포청의 비전

- 자랑스런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·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,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

#### < 재외동포의 개념 >

##### ○ 재외동포기본법 규정 (제2조)

-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(재외국민)
-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(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(외국국적동포+무국적동포)

##### ○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 (제2조)

-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(재외국민)
-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)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(외국국적동포)

### Ⅲ. 재외동포정책의 변화

#### ① 달라진 재외동포정책 기초

- 「재외동포청」 출범('23.6.5.)과 함께 재외동포정책 기초의 근본적 변화

#### ◀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지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▶

[Before]		[After]
일방적인 시혜성 정책	⇒	호혜적인 동반성장
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의 이원화	⇒	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의 일원화 → 종합적·체계적·지속가능한 정책수립과 사업이행
국내거주 재외동포는 정책대상에 제외	⇒	처음으로 재외동포 정책 대상에 포함
여러 부처에 산재된 민원서비스	⇒	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통합민원서비스 제공

#### ② 추진 수단 : 재외동포기본법·재외동포청

-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정 ('23.5.9. 공포), 「재외동포청」 설립
- 종합적·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

#### 재외동포정책의 연혁적 발전

1950년대	조선적 재일동포 포용 차원에서 <재외국민등록법> 제정(1949)
1960년대	정부 정책차원에서 해외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<해외이주법> 제정(1962)
1980년대	해외여행자유화 시행 및 <여권법> 개정(1989)
<b>한소수교(1990), 한중수교(1992) : 외국국적동포 포용적 접근 필요</b>	
1990년대	'재외동포정책위원회' 설치(1996) 및 '재외동포재단' 설치(1997) <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> 제정(1999)
2000년대 이후	재외선거제도 도입(2009) 및 실시(2012) <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>(2013) <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> 제정(2020.5월) <파독광부간호사법> 제정(2020.6월)
<b>700만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 필요성</b>	
2023	<재외동포기본법> 제정(5월), 재외동포청 신설(6월), 재외동포협력센터(공공기관) 신설(6월)

## IV.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

### ① 재외동포,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필수적 동반자

- 한국 위상 제고와 재외동포사회 발전으로 750만 재외동포는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에 기여
- 이에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국가가 동포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동시에 거주국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상생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

### ② 달라진 대·내외 환경

- 동포사회 세대교체, 국내체류 동포 규모 확대 등 동포사회의 변화로 한인 정체성 약화, 국내동포 정착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
- 미·중 대립, 공급망 불안,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중위기(multi-crisis)와 거주국 별로 상이한 재외동포사회의 요구 → 거주국별 맞춤 대응 필요

### ③ 재외동포의 높은 기대 vs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: 공감대 형성

- 재외동포기본법 제정,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법적·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, 그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기대도 상승
- 한편,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, 일부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, 왜곡된 인식도 존재

<2022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>

구분	긍정	보통	부정
재외동포에 대한 호감도	29.4%	57.8%	12.8%
재외동포에 대한 친근감	33.5%	50.5%	16.0%
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발전 기여도	32.0%	44.6%	23.4%

-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와 동포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대가 주요 과제

## V.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: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

(기조치, 잠정 결정, 시행 중, 예정, 추진 중, 준비 중으로 구분)

### ①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(법13조)

☞ 동포청 출범 초기의 우선 과제로 △현장에서 재외동포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이며 동반자인 동포사회의 현장 목소리와 △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

#### ① 동포 간담회 개최

- (기조치) 프랑스·베트남(6월 정상 순방 계기), 일본(8월, 도쿄, 히로시마), 미국(8월 뉴욕, DC, LA), 인도·인도네시아(9월 정상 순방 계기)
- (예정) 2023-24년간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에서 동포간담회 개최
  - 미국, 중국, 일본, 캐나다, 베트남, 우즈벡, 호주, 카자흐스탄, 독일, 영국, 브라질, 뉴질랜드, 필리핀, 프랑스 등 20여개 국

#### ② 전문가 등 의견 수렴

- (시행 중) 재외동포 관련 언론보도 상시 점검 및 국내 동포 관련 회의, 간담회 참석

#### < 동포사회와 전문가의 주요 요구사항 >

- 동포사회의 의견 수렴(기본법 제13조)과 낮은 문턱
- 차세대 정체성 함양 (프랑스, 베트남, 일본, 미국)
-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
  -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, 입양동포 법적지위 문제 해결 (미국, 캐나다)
  - 고려인, 사할린 동포 (러시아, CIS 국가) 등
-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(특히 중국동포)
- 국내체류 정착 지원 및 차별 중단 (전담과 설치)
- 충분한 예산 확보

※ 이하 재외동포 기본법 제3조(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)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술

## ②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[기본법 제3조 ②] : 재외동포정책의 시작

☞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기존의 방법인 △해외 한글학교 교육과 △차세대 모국 초청 연수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△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을 교육

### ③ 한글학교 지원 강화

※ 한글학교 운영비 대폭 증액으로 한글학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, 교사연수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

- (잠정 결정)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(24년 예산안) : 141억→177억(25.7%) 증액
- (잠정 결정) 한글학교 교사육성 지원(24년 예산안) : 19억→27억(44.7%) 증액
  -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온·오프라인 교사 모국 연수 확대
- (추진 중) 국내교사 자격증 있는 한글학교 교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
- (예정)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시행('24.1월, 6박7일)
  - 한글학교 교사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연수 시행
    - ※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초청연수 재개

### ④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초청 연수

- ※ 재외동포 청소년·대학생 대상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, 정체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차세대 동포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유도
- (잠정 결정) 참석 대상(24년도) : 2,300명→3,000명 (59억→77억, 28.8% ↑)
  - 5년 후 9천명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
## ⑤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 발전상 교육

- ※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세대 동포들에게 교육하여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을 함양
- (시행 중)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연수 계기 한국의 발전상 교육
  -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계기 청장 강연 (7.19)
- (시행 중) 해외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한국의 발전상 교육
  - 미주한글학교총연합회(KOSAA) 학술대회 참석 계기 청장 강연 (LA, 8.12)
- (기조치) 동포청-반크 업무협약 체결 (9.11)
  - 한국의 발전상 및 역사·문화에 관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업키로 합의
- (준비 중)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을 소개하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사이트 구축

## ⑥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

- ※ 동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국내 유학토록 초청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재 육성 사업
- (잠정 결정)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 증액(24년도): 41억→43억(4.8% ↑)
  - 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, 정기적인 현황조사, 지역별 장학생 동문회 활성화 등 네트워크 지원 및 활용 예정

### ③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[기본법 제3조 ①]

☞ △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, △해외 입양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,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△한국의 발전상 등을 교과서 등에 수록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

#### ⑦ 재외동포 국적 문제

- 국적법 관련 재외동포들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주무부처(법무부)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
  - △ 국민 및 재외동포 의견 수렴, △ 현 국적제도 홍보·설명 강화, △ 현 제도의 유연한 적용 검토 등

#### ⑧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

- ※ 궁극적인 수혜자인 재외동포사회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 및 한국의 역사·문화를 외국 교과서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, 차세대 재외동포의 주류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
- (기조치) 반크와 동 관련 업무협약 체결(9.11)
  - 한국의 발전상 해외 전파를 위해 한글학교 등 동포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
- (준비 중) 반크와 함께 컨텐츠 제작(국가별 맞춤형 접근) 및 사이트 구축 →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에 알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또는 단체 발굴 → 공동 사업계획 작성 및 시행

## ⑨ 해외 입양인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

※ 입양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국적을 갖지 못한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 '입양인 시민권법' 입법 지원 (2015년부터 매회기 발의되었으나 불통과)

\* '12년 이전 한인 입양인 약 11.3만 명 중 약 1.8만 명은 미시민권 취득여부 미확인

○ (추진 중)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조속 통과가 예상되는 적절한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對의회 아웃리치 지속 추진 (외교부와 협업)

- 재미동포사회의 미 정치인 접촉, 입양인 시민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 측면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 전개

## ⑩ 「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」 이행

※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

○ (시행 중) '고려인 동포법'에 따라 6개 분야\*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

\* 합법적 (거주국) 체류자격 취득 지원,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, 문화활동 등 교류증진 지원, 교육활동 지원,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지원, 언론활동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22년도 약 14억 4천만원 지원

## ④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[기본법 제3조 ③] →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

☞ 세계한인회장대회·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, 세계한인과학·기술자 대회, 세계한인법률가 대회, 세계한인여성 대회 등 지원,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사회 각계의 한인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대한민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

## ⑪ '세계한인회장대회' 행사

※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, 재외동포 상호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구축,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,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

○ (기조치) 세계한인회장대회(10.3.~6.) 개최

-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변화된 재외동포 정책 소개 및 동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'정부와의 대화' 프로그램 강화
- 재외동포의 모국 발전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'산업 시찰' 프로그램 신설
- 재외동포 및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'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', '지역별 현안토론' 프로그램 내실화

○ (잠정 결정) 사업예산 증액(24년도) : 2억

## ⑫ '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' 내실화

※ '세계한상대회'를 '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'로 개편하여,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, 기업투자 유치, 해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

○ (예정) 제21차 대회 해외에서 최초 개최 ('23.10.11-14, 美 에너하임)

- 참가기업 대폭 증가 (100개 → 600여개)
- 참가기업 업종의 다양화 (무역, 상공업 업체 중심 → 4차 산업, 금융, 환경, 문화, 스마트 분야 업체로 다양화)
- 스타트업 경연대회, 벤처캐피탈 투자포럼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스타트업 미국 진출 지원
- 기업전시관 대폭 확대 (국내기업 400여개, 미국기업 200여개 등 기존 3배)
- 미국의 다양한 진성 바이어들과 국내외 한인 기업들 간 비즈니스 미팅 및 미국 진출 기회 제공

### ⑬ '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' 추진

※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인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동포 육성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로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에 기여

○ (잠정 결정) 신규사업 반영(24년 예산안) : 약 2억 6천만원

### ⑭ 재외동포전문가대회 적극 지원

○ (추진 중) 세계한인과학·기술자대회, 세계한인법률가대회, 세계한인여성대회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## ⑤ 재외동포 보듬기 : 국격에 걸맞는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

☞ 국가가 재외동포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△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, △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, △소의 동포를 모국으로 초청

### ⑮ 해외 위난 상황시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

※ 해외위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실질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

○ (기조치) 신속한 동포지원을 위해 적십자와 MOU 기체결 (7.27)

○ (잠정 결정)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 반영(24년 예산안) : 4천만원

### ⑯ 역사적 특수동포 (사할린 동포) 관련 제도 개선

※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통해 사할린 영주귀국사업 대상자 확대 등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사할린 동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

○ (추진 중) 사할린 동포법 개정

-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동 배우자에서 본인, 배우자,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로 확대 추진

⑰ 소외 재외동포(원폭피해동포, 파독근로자, 고려인 등) 초청 사업

※ 원폭피해동포, 파독근로자,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보듬고, 한국 발전상을 보여주어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

○ (기조치)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(9.28.~10.3.)

○ (잠정 결정) 신규사업 반영(24년 예산안) : 8억

**⑥ 80만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[기본법 제3조 ④]**

☞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△국내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△출입국·체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, △취약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

⑱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

※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고,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, 전파

○ (추진 중) 재외동포에 관한 사항의 한국 교과서 수록 사업 (교육부 협업)

- 재외동포의 개념, 모국에 대한 기여,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 등의 학습요소를 한국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

○ (준비 중)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전파

⑲ 국내 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구축 (범부처 협업과제)

- ※ 국내 외국적 동포의 증가,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 동포의 증가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
- (준비 중) 국내동포 출입국·체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검토
- (준비 중) 모국 귀환 고령 동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
  - 세제, 연금, 보험 등에 있어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 검토

⑳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

- ※ 국내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
- (준비 중) 국내 동포 주요 정착지 지자체와 협력 방안 모색
  -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
- (준비 중) 취약 국내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적십자와 협력 방안 모색

**7 편리한 동포 생활 :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**

☞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이 궁극적으로 국내와 같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△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, △온라인 영사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, △재외국민등록 등 동포 민원제도 개선

㉑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

- ※ 재외동포들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여러 소관 부처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, 재외동포청이 여타 부처와 협업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

- (시행 중) 다부처 민원 서비스 제공 '통합민원실' 운영
  - 해외이주, 영사확인, 국적, 출입국, 병무, 세무, 고용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다부처 민원 서비스 제공(총 25개 창구 운영)
  - 통합민원실 및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개소(6.5)
    - \* 통합민원실(관계부처 합동 근무)-재외공관 민원실-24시 동포콜센터-온라인 민원 서비스까지 유기적으로 연결, 협력관계 구축

## ㉒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

- ※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자택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
- (시행 중) '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' 구축
  - (1단계) '재외국민 모바일 여권정보증명서' 발급
    - \*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 가능하게 함.
  - (2단계) '재외동포인증시스템' 구축
    - \* 한국 스마트폰 없이도 민간(카카오, 토스 등) 제공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기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

## ㉓ (추진 중)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추진

- ※ 재외동포들의 민원사항인 재외국민등록시 기간도과자 등록 허용 및 국적상실자 대상 재외국민 등본 발급허용 등 재외국민등록제도\* 운영 개선
  - \* 재외국민등록제도 : 해외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예정 또는 체류중인 국민이 체류지역 관할공관에 등록하는 제도
- 재외국민 해외거소 사실관계증명서 발급(단기) 및 기간도과자 재외국민등록 허용제 도입(중장기)
  - (기존) 재외국민등록기간 도과 후 국내 귀국한 경우, 과거 해외체류 사실에 대해 재외국민 등록 불가

- (개선) 국내귀국자 중 등록말소자에 한해, 현지에 90일 이상 체류한 증빙 자료 제출시 해외체류사실관계증명서 발급
  - (향후 추진방안) 재외국민등록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도과자에 대한 재외국민등록 허용
- 국적상실자 대상 재외국민등본 발급 허용
- (기존) 국적상실자는 재외국민등본 발급 불가
  - (개선) 국적상실자도 과거 재외국민등록 기록이 있는 경우 말소자용 재외국민등본 발급 허용. 끝.